의안번호	2200521
의 뢰 인	배현진의원
회 답 일	2024. 7. 11.
추계번호	24C0881

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,000만원(연평균 1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○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
○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5조)	90	-	-	-	-	90	1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7조(협력체계의 구축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11조(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13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,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14조(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·운영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,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5조(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6조(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·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, 대학,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치유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·개발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7조(전문인력의 양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등과 관련한 대학,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8조(재정지원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치유관광사업자, 단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9조(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치유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22조(치유관광산업지구에 대한 지원)	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에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·체험프로그램·교육 개발 등에 관한 사항,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·홍보·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
2	안 제7조(협력체계의 구축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3	안 제11조(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)		
4	안 제13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)		
5	안 제14조(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·운영)		
6	안 제15조(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)	×	- 사업규모 예측 불가능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범위·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
7	안 제16조(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)	×	- 실시 중, 사업규모 확대 가능
8	안 제17조(전문인력의 양성)		
9	안 제18조(재정지원 등)		
10	안 제19조(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)		
11	안 제22조(치유관광산업지구에 대한 지원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○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4년)
안 제7조(협력체계의 구축)	- 치유관광산업 육성 협의체 운영비(0.4억원)
안 제11조(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)	- K-치유관광지 인증 및 지원(17.5억원)
안 제13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)	- 치유관광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 용역(2억원)
안 제14조(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·운영)	- 관광 빅데이터 수집·분석·제공 등(109억원) -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(43억원) - 관광마케팅 통합시스템 운영(31억원) ※ 관광산업 전체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사업임
안 제16조(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)	- K-휴양관광 브랜드 개발·육성(3억원) - 의료관광 특화 상품개발 등(5억원) - 융복합 휴양 관광상품 개발(4억원)
안 제17조(전문인력의 양성)	- 우수 치유관광시설 종사자 실무교육 운영 1억원 -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1억원
안 제18조(재정지원 등)	- 치료관광객 유치업체 육성(5억원) - 휴양관광산업 마케팅 및 상품화 지원(10.8억원)
안 제19조(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)	- K-뷰티·메디 페스타 소비자행사 개최(15억원) - 취약계층 대상 템플스테이 지원(2억원)
안 제22조(치유관광산업지구에 대한 지원)	-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원(30억원)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❑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(안 제15조)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전문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정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❑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 소요 발생 예상

❑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
❑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9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
○ 문화체육관광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도에 9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3]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5조)	90	-	-	-	-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❑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